

제406회 임시회
' 23. 1. 18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3년 1월 6일

○ 회부일자: 2023년 1월 6일

3. 제안이유

-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개선
- 신청자격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질병 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 권 자: NH농협은행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: 의료비후불제 용자금을 받은 도민
 - (현행)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훈대상자, 장애인
- 용자금액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- 용자조건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(이하 “본 동의안” 이라 함)은
 -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따른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,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제3항⁸⁾에 따라 변경사항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되는 바,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완화하려는 것임.

※사업대상자 확대(안) : 112,358명 → 440,549명(증 328,191명)

현 행	변 경 안 * 중복인원 제거
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31,915명)	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
②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(10,311명)	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
③ 만 65세 이상 장애인(50,195명)	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
④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(19,937명)	④ 장애인(47,012명)
	⑤ 국가유공자(6,501명)

- 본 동의안에 따른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의 확대는 도 내 거주하는 보다 많은 수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치료를 받아 기대수명 연장

8)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- 다만, 본 변경 동의안에 따라 사업대상이 현행 112,358명에서 440,549명으로 4배 정도 확대됨에도 불구하고, 이에 따른 사업비(2,500백만원)와 사업량(830명^(최소)~5,000명^(최대))은 증액 및 확대 없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과 동일하게 제출되었음.
- 물론, 본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적 성격의 사업인 만큼 실제 신청자 규모의 추계가 어렵다는 점, 과도한 예산추계로 인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사업비와 사업량을 증액 및 확대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나, 이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, 추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그 취지 및 내용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본 사업은 시범사업인 만큼 철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.
- 특히 도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대상 수술(시술)의 추가 발굴 및 도 내 시·군 간 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서비스 대상 병원의 추가 발굴을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.